

# 89년 석유사업기금

## 운용계획의 이모저모

趙 基 成

(동력자원부 에너지정책과 화공기좌)

### I. 머리말

석유사업기금은 70년대의 1,2차 석유위기로 당시의 국내石油수요에 대한 절대적인 物量확보의 어려움과 불투명한 국제石油시황에 관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의 하나로 1977년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고, 약 2년후인 79년 10월부터 앞으로는 우리도 더 안정된 석유를 신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속에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基金의 제도와 징수는 석유위기에 대한 충격과 이에 따른 석유의 안정공급에 당위성이 부여되었고, 그 제도를 마련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이와같은 당위성에 대한 공동인식이 바탕이 되어 그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후 국제석유시황이란 거대한 경제적 과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이 석유사업기금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手相도 변한다고 했다. 석유사업기금 징수후 약 10년, 지난 88년 연초부터 석유사업기금을 출발시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속에 심판을 받아야했고, 심지어 제도의 타당성까지 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석유사업기금에 대한 여러가지의 의혹과 기금제도에 대한 논란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되어가고 있으나 기금의 운용규모가 큰 탓으로 이를 둘러싼 크고 작은 오해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어 몇개월후에 석유사업기금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89년도 석유사업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던 싫던 기금이 가야할 길이며, 자체에 그동안의 운용실적도 함께 밝혀 석유사업기금을 평가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 II. 基金의 설치와 운용관리절차

#### 1. 基金의 설치와 법적용도

석유사업기금을 1977년 12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基金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1979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현행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石油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石油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목적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동법 제17조의 3에서

- (1) 석유수입 또는 석유 판매시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 (2) 국제원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국내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 이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 (3) 한국 석유개발공사법 제11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 (4) 제17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과 (5)의 규정에 따른 재원이 석유사업기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는 동 기금에 상당하는 국내油價를 인하하여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거나 原油관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세수로 흡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소세, 부가세등의 제세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이와같이 조성된 基金의 용도는 에너지관련사업과 여유자금의 활용으로 구분되나, 여유자금의 활용에 대한 규정은 86년이후 基金규모가 크게 증대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크게 보면 원유관세를 통하여 제정에 흡수할 재원을 기금으로 흡수, 일시적인 보유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基金의 용도는 에너지관련사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석유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基金의 용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에너지관련사업 : 석유사업법 제 17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 石油의 비축, 저장 및 수송시설
  - 石油개발사업 및 품질관리사업
  - 原油의 차등가격과 석유제품가격의 평균화로 인한 손실의 보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
    - 石油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융합화학사업, 정유 시설현대화사업, 석탄산업전원개발사업, 가스사업과 기타 에너지자원개발 및 생산의 육성추진사업 등

• 여유기금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 17조

-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제, 공채, 통화인정증권의 매입 및 재정자금에의 예탁

## 2. 징수 및 운용, 관리절차

• 기금의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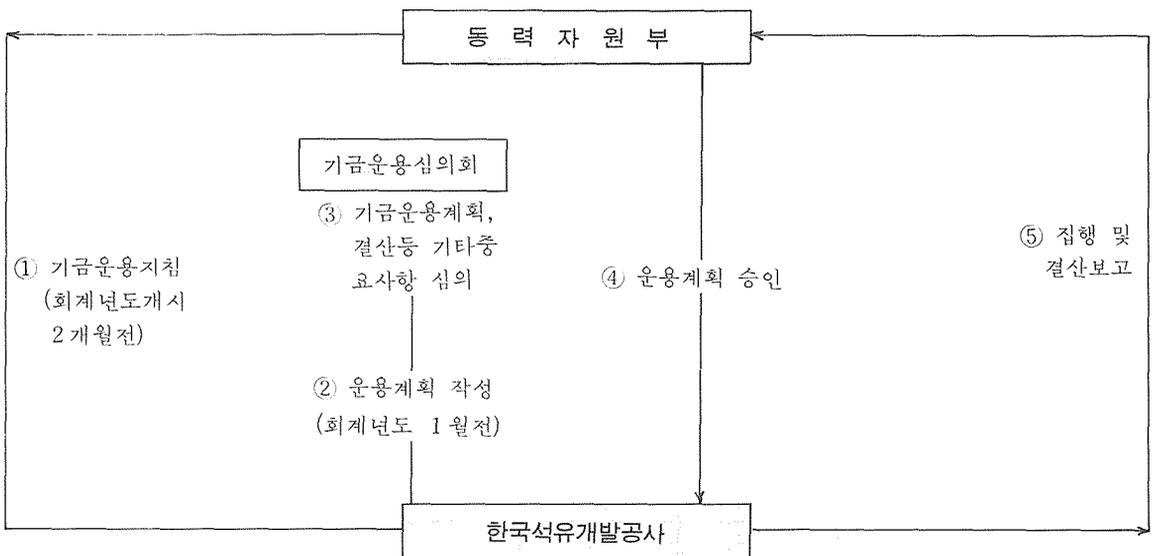
- 징수대상 : 石油수입시 일정액을 石油수입업자(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
- 징수기준 : 국내油價반영 기준원유가와 수입원유가와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관계부처(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의 협의를 거쳐 고시

- 징수방법 :

- 石油수입업자가 수입石油 통관일까지 L/C 개설 은행에 납부
- 은행은 수납즉시 기금구좌에 입금(油開公이 管理)

• 基金의 운용, 관리(관리주체 : 한국석유개발공사)

- 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운용계획 수립
- 석유사업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후,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운용·관리
-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의 운용
  - 석유사업 기금운용 심의회는 동력자원부 차관을 위



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1급공무원(차관보)과 경제계 2인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심의회는 基金운용계획, 결산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基金운용계획 확정을 위한 심의 경우 당해년도 총 조성규모와 조성된 基金의 사용으로 에너지관련사업의 지원규모와 재정예탁등 여유자금의 규모를 심의하는 것으로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基金의 영향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목적으로 '86년 5월 基金조성규모의 증대에 따라 설치되었다.

그동안 심의회는 이와같은 목적에 따라 운용되어 왔으나, 경제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방향설정에 지나친 역할을 두다보면 基金본래의 목적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효율적인 基金운용을 위해 심의회의 위원을 경제각부문의로 확대하려고 추진중에 있다.

### Ⅲ. 基金징수 경위와 그 역할

#### 1. 징수경위

- 1977년 12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基金설치근거를 마련하고 1979년 10월부터 징수개시
- 당시 석유위기도 국제原油價 향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정부는 기준原油가격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국내油價를 결정하고 그 가격

과 차액을 기금으로 징수한 한편 별도의 비축기금을 징수함.

-1980년에 들어와 기준원유가격 미달분은 징수하고 초과분을 보전하는 손실보전제도로 변천

-이에따라 조성된 基金은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을 石油비축사업에 활용하고 일부는 국내소요原油 안정확보를 위한 原油도입선 다변화에 지원

• '83년 국제原油價가 배럴당 약 5달러가 하락하자 일부는 국내油價에 반영하고 일부는 석유사업기금 및 원유관세로 흡수하여 향후 국제원유가 상승에 대비함.

-'83년이후 '85년말까지 原油價 및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油價 인상요인을 석유기금 및 원유관세로 완충함으로써 국내油價 안정유지(86년초 기금징수 0.5 \$/B, 원유관세율 1%유지)

-이에따라 조성된 석유사업기금은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石油비축사업이외에 에너지이용합리화, 저탄사업지원 및 전원개발사업등 에너지관련부문에 지원을 확대하여 石油대체 및 에너지 공급기반구축에 지원확대

• 86년부터 국제原油價의 대폭하락에 따라 일부는 국내油價인하 및 원유관세율 인상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함.

-국제原油價가 '85년말 배럴당 22달러 수준에서 '86

(기금조성 및 활용추이)

	조 성(억원)			비 고
	신규징수	운용수익	計	
1979	1,103	34	1,137	-연간 1,000억원 수준 조성 -石油비축 및 원유도입선다변화 등에 활용
1980	203	324	527	
1981	1,162	244	1,406	
1982	1,774	287	2,061	
1988	3,420	302	3,722	-연간 3,000억원 수준 조성 -에너지관련부문 지원확대, 에너지이용합리화, 전원개발 등
1984	2,688	373	3,061	
1985	1,884	648	2,532	-연간 8-9,000억원 수준 조성 -종합경제적 관점에서 활용, 산업체질강화, 재정예탁 등
1986	7,007	997	8,004	
1987	8,234	1,697	9,931	
1988	7,754	2,142	9,896	
計	35,229	7,048	42,277	

년 5월에 15달러, 7~8월에 8달러에서 '87년중에는 다시 15달러 수준으로 반등하는등 예측이 불투명하여 국내油價를 일정수준에 두고 나머지 원유가 차액을 불가피하게 原油관세와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케됨.

-이에 따라 조성된 석유사업기금은 연간 8~9,0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에너지관련사업 이외에 原油價하락으로 타격을 받은 산업부문 및 재정에 예탁하는 등 국민종합경제적 관점에서 활용.

- 88년이후 국제原油價는 배럴당 15달러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비교적 안정추세에 있으나, '86년 이후 6차례의 국내유가 인하로 국내油價는 타 경쟁상대국에 비해 비교적 저가인 반면, 더 이상 추가인하하지 석탄산업의 타격 및 原油관세를 인상흡수의 한계등으로 불가피하게 국제원유가 변동과 국내油價반영 기준원유가와의 차액을 基金으로 징수하게 됨.

-석유사업기금의 당초 石油비축등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정목적사업 수행에서 原油價 및 환율하락분을 흡수하는 국내油價 관리수단으로 그 성격이 변화됨

-基金조성규모의 증대에 따라 基金 운용등에 대한 논란대두

## 2. 기금의 성격변화와 역할

- 石油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정목적사업수행

-석유사업기금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石油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국내油價관리와 石油비축 및 유전개발 사업이었다. 이에따라 78년이후 향방을 알 수 없는 국제石油시황에 대비한 국내油價관리의 수단으로 정부는 기준원유가격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국내油價를 정하고 동 기준가격에 미달되는 부분을 基金으로 징수함으로써 국내유가를 안정, 관리할 수 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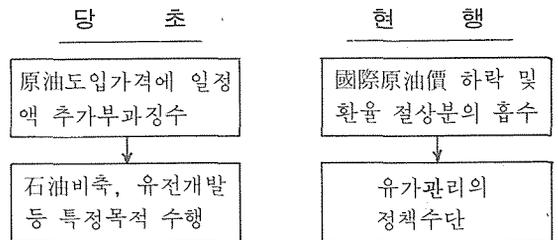
-'81년 10월 OPEC총회이후 산유국별로 다원화 되었던 原油가격이 안정되자 82년 3월 기준원유가격 차액 징수, 보전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원유에 동일한 기금을 부과함으로써 基金의 油價관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石油비축 및 유전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79년 10월 원유도입가에 3.3%의 비축기금을 부과했고 '83년 6월에는 개발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石油비축기금과 개발기금의 징수단가 추이를 보면 비축기금의 경우 '80년이후 '86년 5월 비축, 개발, 안정의 3개의 계정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통합할때까지 비축기금을 배럴당 1달러 전후, 개발기금을 배럴당 0.1달러로 한정되어 이와같은 특정목적 사업수행에도 힘든 실정이었다.

- 油價管理수단

-석유비축과 유전개발 사업등 에너지 관련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原油도입가에 일정액의 기금을 추가부과하던 석유사업기금은 '86년 대폭적인 국제原油價의 하락으로 基金조성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국내油價관리 수단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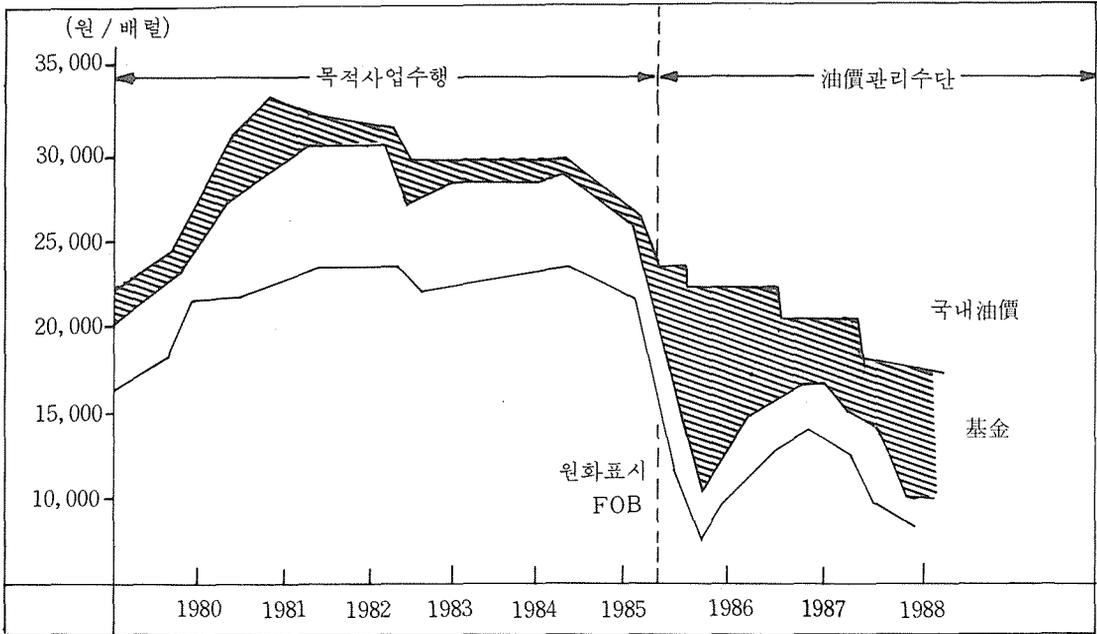
-이와같은 기금성격과 역할이 변화하게 되는 요인을 요약하면 첫째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당시의 국제原油價를 기준으로 국내유가를 인하할 경우 국제원유가 상승시 국내유가의 재인상으로 인한 혼란과 현행 우리나라 石油가격이 주요경쟁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韓 國	日 本	台 滿
휘 발 유	100	161	76
경 유	100	201	134
B-C 油	100	133	98

둘째는 과도한 국내油價 인하시 에너지源間 특히 석탄과 적정상대가격 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절약에 이완될 우려가 있고

셋째는 이와같은 요인으로 과도한 국내油價인하가

〈原油價 변동과 기금의 역할〉



곤란할 경우 등 油價인하요인을 原油관세나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하여야 하나, 原油관세의 경우 한 때 최고 24.5%까지 인상조정하였으나, 관세를 조정에 의한 재정 흡수시에도 原油價 변동에 대한 신속적인 대응결여등 문제점이 내포되어 불가피하게 석유사업기금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요인으로 조성된 基金의 용도는 에너지부문의외에도 산업체질강화 및 재정예탁등으로 일반경제부문에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原油관세와 더불어 油價관리수단 뿐만 아니라 재정기능으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 日本, 臺灣의 基金관련제도

-日本의 경우는, 石油가격이 자유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基金과 같은 제도와 직접 비교될 수는 없으나 국내油價관리를 제외한 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原油 및 석유제품관세 수입은 “석탄, 石油 및 석유 대체에너지 대책특별회계(석유회계)”에 충당하고 있으며, 동 原·重油關稅收入으로 재원조달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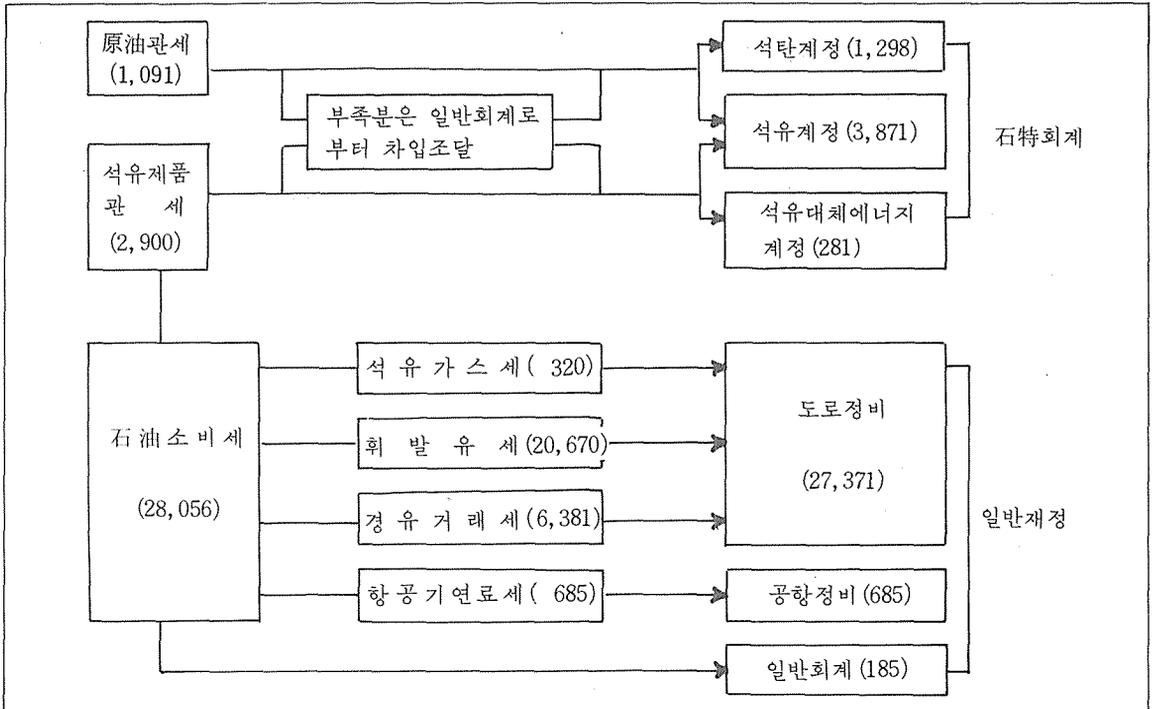
할 경우 원·중유관세의 상향조정 또는 일반회계 및 석유공단으로부터 차입조달하여 석특회계를 운영, 에너지 관련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석유제품 판매시에 부과하는 石油稅는 일단 일반회계세입으로 흡수한 다음 일부는 석특회계로, 일부는 도로 및 공항정비등 정부의 특정목적사업수행에 사용하는 목적세 성격으로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특소세와 유사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基金과 동일한 역할을 석특회계가 담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基金이 油價관리 역할과 에너지관련목적사업을 수행한 반면, 日本의 경우는 정책을 원·중유관세로 부과하여 석특회계에 일정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臺灣의 경우 석유정제 뿐만아니라 유통이 정부통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석유사업기금이나, 日本의 석특회계와 같은 제도는 없고 국내油價와 原油도입가의 차액을 전액 中國석유공사가 흡수하여 국내유가인하 또는 정부재정에 납입하게 되는 것으로 매년도 일정액을 재정에 계상하고 있다.

〈88년 日本의 석유제세와 에너지사업재원 조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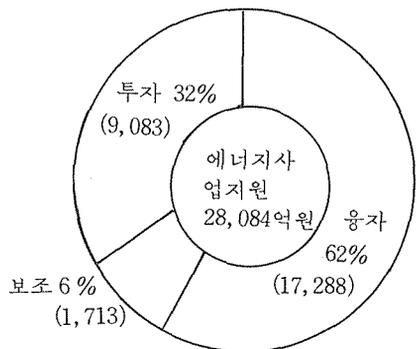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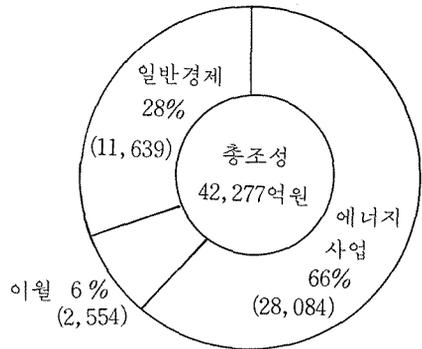


#### IV. 基金운용실적 및 '89년 基金운용계획

##### 1. 基金운용실적('88말 잠정)

###### 가. 基金조성및 운용

- '88년말로 석유사업기금의 조성규모는 4조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조성추이를 보면 '86~'88년의 3년동안에 2조7,831억원으로 총조성액 4조2,277억원의 약 66%가 이간에 조성된 셈이다.
- 조성된 基金은 '86년부터 여유자금을 활용 일반경제에 지원하기 시작하여 '88년말까지 이 부문에 지원된 총규모는 1조1,639억원으로 전체조성액의 약 28%에 해당한다.
- 基金사업별로는 총조성액 4조 2,277억원중 석유개발공사운영, 原油도입선다변화등 보조로 사용된 1,713억원을 제외하면 '88년말 현재 잠정기금자산은 4조564억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비축시설 및 비축유구입등 투자사업에 9,083억원, 유전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 가스 및 석탄산업등에의 융자사업에 1조7,



〈基金 운용실적〉

(단위 : 億원)

		1979 - 1988말(전망)	비 고
운 용 규 모		44,514	
○ 조 성		42,277	• 기금징수 (35,229) 및 운용수익 (7,048)
○ 용 자 회 수		2,237	
사 용	○ 에너지부문지원	28,084	
	○ 일반경제지원	11,639	
	- 산업구조조정	4,239	• 산업체질강화 (3,739) 및 지하철 (500) • 87년 (2,200), 88년 (5,200)
	- 재정예탁	7,400	
	이 월	2,554	

註 : 事業基準

288억원, 재정등 일반경제에 1조1,639억원, 이월금으로 2,55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나. 운용성과('79~'88말 잠정)

〈에너지部門〉

- 石油비축시설 및 비축유구입 : 8,885억원
  - 비축시설(2,563억원)
    - 原油 2개소 완공(38,000천 배럴) 및 LPG 1개소 건설중(160천톤)
  - 石油비축유 구입(6,322억원)
    - '80년말 275천배럴에서 '88말 38,080천배럴(60일분) 확보
- 에너지절약 투자확대 : 8,862억원(총 12,078건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 : 이용효율향상, 주택단열등 9,595건 지원
  -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 2,483건 지원
- 국내의 자원개발 : 1,151억원
  - 국내의 油田개발사업(1,068억원)
    - 국내대륙붕 물리탐사 및 시추와 해외유전개발사업 9건 진출에 개발
    - 原油 10,613천 배럴 도입
  -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사업(83억원)
    - 유연탄 및 우라늄등 12건 진출에 유연탄 10,724천톤 개발도입
- 도시가스공급 기반확충 : 2,858억원
  -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지원(1,466 억원)
  - 도시가스 공급망 건설(1,392 억원) : 공급배관망 2,618km건설 및 수용가 742천 가구 지원
- 電源개발사업 : 3,370억원

- 다목적댐 건설 및 한전 전원개발사업지원
  - 석탄산업지원 : 2,053억원
    - 비수기 저탄 및 석탄광 개발 사업등 지원
  - 송유관 건설등 기타에너지사업 공급기반 확충 : 1,429억원
- 〈一般經濟部門〉
- 산업기술향상 및 구조조정 지원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산업기술향상(3,089억원)
      - 중소기업시작품개발 및 시험장비구입
      - 첨단기술 및 부품산업 공동연구
      - 중소기업 공통으로 기술개발용
    - 산업구조조성(650억원)
      - 섬유산업등 합리화 지정기업의 업종전환, 보완시설 투자
    - 지하철 원리금 상환지원(500억원)
  - 재정투, 용자 특별회계의 예탁으로 농어촌, 도시서민 지원등 국민복지향상에 기여

1987	1988	1989(계획)	합 계
2,200억원	5,200억원	5,500억원	12,900억원

2. '89년도 石油事業基金 운용계획

- 가 '88년도 석유사업기금 假決算
- 우선 조성부문에서는 당초계획비 原油도입가가 배럴당 1.83달러가 하락하여 조성계획 1조 1,202억원보다 1,568억원이 증가한 1조2,77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 운용부문에서는 기계발油田매입의 지연 및 국제자원

(88 石油基金 가정산 요약)

(단위 : 億원)

		계 획	전 망	차 이
조 성	- 전 년 이 월	2,486	2,486	
	- 신 규 징 수	6,700	7,754	1,054
	- 운 용 수 익 등	2,016	2,530	514
	計	11,202	12,770	1,568
운 용	- 에 너 지 사 업	5,402	5,016	386
	- 재 특 예 탁	5,800	5,200	600
	計	11,202	10,216	986

가격하락에 따른 해외에너지 자원개발사업의 추진부진등으로 에너지 사업에서 386억원과 재정예탁에서 당초 5,800억원을 5,200억원으로 600억원이 감소하여 운용부문에서 986억원이 불용되어 추가 조성된 1,568억원을 합한 총 여유자금을 2,554억원으로 추정하여 '89년도로 이월사용케 되었다.

나. '89년도 石油事業基金운용계획

(1) 주요전제

- 基金조성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는 국제 원유가와 對美 환율이다. 환율이야 국내의 여건으로 보아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가능하지만, 국제原油價는 어느 누구의 예측도 신빙성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유가 전망에는 논란이 많다.
- 급년도 평균 국내도입원유가로 배럴당 15.5달러 추정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요인과 사전적인 예측요인이 복합된 전망치로 세계의 주요연구기관인 EIA, WFA, DRI 및 日本석유연맹의 전망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여 연평균 배럴당 14~17달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원유가 (FOB) 환	율	원유관세율	기금징수단가
15.5\$ / B	670원/\$ (換算반영환율)	10%	3.1\$ / B

(2) 運用方向

- 장기 基金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基金목적사업의 지속적 추진  
- 石油수급안정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및 석탄산업에 중점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물가, 통화안정에 기여하도록 종합경제정책과 연계 운용

• 에너지관련사업 지원분 이의 여유자금은 재특등에 예탁

• 국제原油價, 환율등의 여건변동으로 基金조성규모 변동시는 국내油價관리 등과 연계하여 신속적으로 조정, 운용.

(3) 운용총괄

- '8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신규조성액 1조500억원과 전년도 이월 2,554억원 및 기용자분중 '89년도에 회수 될 자금 746억원을 포함하여 총운용규모를 1조 3,350 억원으로 추정하였다.
- 사용은 에너지관련사업에 6,450억원을 배분하고 '89 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재특에 5,500억원을 예탁키로 하고 나머지 1,400억원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재원조달 및 에너지가격대책 등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단위 : 億원)

		1988 (잡정)	1989 (계획)	1989말 (누계)
	- 신 규 조 성	9,896	10,050	52,327
	- 용 자 회 수	388	746	2,983
	- 전 년 도 이 월	2,486	2,554	-
운 용 규 모		12,770	13,350	55,310
사 용	○ 에 너 지 부 문 지 원	5,016	6,450	36,771
	○ 일 반 경 제 지 원	5,200	5,500	17,139
	- 산 업 구 조 조 정	-	-	4,239
	- 재 정 예 탁	5,200	5,500	12,900
	○ 에 너 지 대 책 예 비 자 금	-	1,400	1,400
	이 월	2,554	-	-

(4) 에너지관련사업 세부지원내역

- '89년도 基金운용계획중 에너지 관련사업의 지원특징은 최근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연탄사용 서민층의 보호를 위해 석탄가격대책 지원비 836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는등 석탄산업에 총 1,548억원을 지원, 전년실적 352억원 대비 4배이상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가스공급배관망 건설 및 수용가시설 지원 및 LNG 공급기반구축을 위해 전년대비 상당수준 증액지원하였으며,
- 부존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

〈에너지사업 세부지원내역 및 지원요령〉

사 업	지원규모 (억원)	지 원 대 상
가. 投 資		
○ 비축시설 및 비축유 구입	327	• 石油사업기금(한국석유개발공사)
나. 融 資	5,062	
○ 유전개발	643	• 油田개발 및 유전매입참여업체,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석유시추(주)
○ 에너지利用合理化	1,420	• 에너지절약시설, 시범보급시설 및 기술실용화설비 설치자의 기자재생산자, 집단에너지공급자, 단열개수대상주택소유자, 지역난방사업자 등
○ 代替에너지개발 보급	940	• 代替에너지 생산공급자, 利用施設設置 및 機資材 生産者, 연구사업수행자
○ 해외에너지자원 개발	132	• 해외에너지자원 개발사업 참여자
○ 도시가스공급	1,053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사업자 및 도시가스수용자
○ 石炭鑛開發 및 輸入炭지원	712	• 대한광업진흥공사 및 대한석탄공사가 선정하는 실수요자
○ 送油管 건설	57	• 한국송유관(주) 및 송유관 건설 사업자
○ 정유시설현대화	100	• 重質油分解 및 脫黃施設 건설 석유정제업자
다. 補 助	1,061	
○ 原油導入先多邊化 및 석유품질관리	81	• 多邊化地域 원유도입자,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代替에너지기술개발	40	• 代替에너지 기술개발 연구사업 참여자(産, 學, 研)
○ 石炭價格 대책 지원	836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 유개공운영 및 기금관리	104	• 한국석유개발공사
計	6,450	

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감안 현재와 같이 유가가 안정된 시기에 신·재생에너지등 대체에너지개발 연구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에너지 공급구조의 대외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전년실적 676억원 대비 1.5배에 가까운 980억원으로 크게 늘려잡고 있다는 점이다.

V. 맺는말

석유사업기금징수 개시이후 11번째의 기금운용계획을 마무리하면서 기금의 虛와 實이 실감나게 마음에 와 닿는다. 갈대가 연약하지만,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처럼 모순된 논리일지는 모르지만, 석유사업기금도 최

소한 虛하고 연약한 일면이 없었다라면 설치후 10년동안 국내의 石油정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지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는 유동적인 국제石油시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키위한 油價관리수단으로, 민간기금으로서 허전한 일면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탓이라고 보인다.

최근 각종기금에 대한 제도, 운용등의 차원에서 논란이 대두되고 있지만, 日本, 臺灣등 주요국가와 油價관련 기금제도를 비교할때 석유사업기금제도 그 자체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서 石油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적합한 제도로 어느때가 인정될 것이며, 에너지가격관리방안과 日本의 석특회계와같이 에너지관련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현행 석유사업기금제도도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

로 보이며, 그 운용은 현재와 같은 低油價 시기에 에너지의 안정공급기반구축에 충실히 확대투자하여 高油價 시기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에너지공급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日本의 경우, 매년 석유회계에 5,000억원 이상을

계상 운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금년 운용계획을 관련 부처와 협의 하면서 에너지부문의 지원을 대폭 감축 재정되는 예비자금으로 확보코자하는 의견을 접할때 경제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나름대로 의견은 있겠지만 첨단과학에 투자를 아끼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싶어하는 욕망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

## □ 직장인의 예절 □

# 이것만은 지킥시다

근무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

업무상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상사나 옆사람에게 행선지를 알린다. 귀사에정시간도 함께 알리는 것이 좋다. 몇 군데를 도는 경우에도 한 곳 한 곳의 행선지를 명확히 해둔다. 손님이 오거나 약속 때문에 자리를 뜰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의 흐름으로 판단해서 잔업을 해야겠다고 생각되면 아침에 관계자의 이해를 얻어둔다. 용무가 있어서 남을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 질질 끌려서 잔업하는 것 같은 행위는 하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 잡담, 가족이나 친구의 직장방문, 너무 잦은 화장 등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 사적 용무로 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외출하게 될 때에는 상사에게 이유를 확실히 말하고 외출허가를 얻을 것.

‘약간 짬이 있기 때문에’와 같은 안일한 판단은 금물이다.

결근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상사 및 동료에게 알리고 결근 전날에는 인사를 차린다. 돌발적인 경우에는 일과시작시간 직후에 전화연락을 한다. 지각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사고 등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연락을 해야 한다.

퇴근시간은 명확히

퇴근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보면, 일이 끝나면 쓸데없이 남아있지 않고 돌아갈 때는 책상 위를 정리

정돈 한다. 또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퇴근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도중에 무책임하게 나가버려서는 안 되며 가능한한 자료와 서류 등을 집에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퇴근시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이비충성형. 이런 사람들은 신문을 반복해서 읽는 다든지 담배를 피우거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한다. 뒷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못난 것이다. 일이 끝나면 즉시 돌아갈 것.

팬개치기형. 책상 위에 진행 중인 일거리나 서류를 버려둔 채, 업무에 관계되는 전화는 계속 오는데 연락도 없이 귀가하면 남아있는 사람만 곤혹스럽게 된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일을 내팽개치고 직장을 나가서는 곤란하다.

총알형. 이런 유형은 일단 밖에 나가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

갖고 달아나기형은 하다가 남은 일거리를 잔업하지 않고 집으로 갖고 가는 타입. 이것도 곤란하다. 자료나 서류를 집으로 갖고 가는 것은 분실의 우려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 특히 뒷사람의 잔업은 정말 중대한 일이 없는한 회사에서 할 것.

약속형은 테이트나 약속시간 때문에 잔업을 하는 사람으로 독신사원이나 여사원에 많다.